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수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1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5월 24일

발 의 자 : 권수정, 김경우, 김소양,
김태수, 김평남, 봉양순,
이병도, 이상훈, 이영실,
이준형, 이호대, 전석기,
황규복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개정(2021. 4. 20. 개정, 2022. 4. 21. 시행)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‘보건위생용품’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‘생리용품’으로 변경됨.
- 이에 따라 이 조례상의 ‘위생용품’ 용어를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‘위생용품’ 용어를 ‘생리용품’으로 개정함.(안 제19조제7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7항 중 “위생용품”을 “생리용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~ ⑥ (생 략) ⑦ 시장은 여성 어린이·청소년 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 서 <u>위생용품</u> 을 지원할 수 있다.	제19조(복지에 관한 권리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 <u>생리용품</u> -----